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9,552,519	20,986,576
일반회계	594,454,751	17,833,643
특별회계	105,097,768	3,152,933
공기업특별회계	78,166,200	2,344,98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366,389	670,99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799,811	1,673,994
기타특별회계	26,931,568	807,9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53,411	37,6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9,943	23,998
주차장특별회계	4,904,346	147,130
수질개선특별회계	19,973,868	599,21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25,08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